



# 2017년 환경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안내

## 융자대상

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상의 중소기업  
(일반사업자, 환경사업자, 재활용사업자)

## 융자범위

\* **시설자금** : 사업과 관련된 시설(장비, 장치, 건축물, 측정기기 등)의 구입·설치·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자금

\* **운전자금** :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(인건비, 원·재료비, 공공요금 등)에 지원하는 자금

**융자금리 1.72%** ('17.1분기 기준)

## 접수기간

**1분기 2.1(수) ~ 2.7(화)**

■ 2분기: 4.3(월)~4.7(금)

■ 3분기: 7.3(월)~7.7(금)

■ 4분기: 10.10(화)~10.16(월) ※단,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인터넷접수: **융자관리시스템** <http://loan.keiti.re.kr>

현장 접수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실

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2실 02-2284-1739, 1733~1738

##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조건

### 1. 환경개선자금 총 620억원 / 일반 중소기업

지원분야	기업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지원용도
시설	50억원	3년거치 4년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오염방지시설</b> 오염방지 및 예방을 위한 장비·장치·설비의 구입·설치 및 건축비 등</li> <li>• <b>유해화학물질처리시설</b> 유해화학물질을 제조, 보관·저장,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(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득한 자)</li> </ul>

### 2. 환경산업육성자금 총 455억원 / 중소기업

지원분야	기업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지원용도
시설	30억원	3년거치 4년상환	• 장비·장치·설비의 제작·구입·설치 및 건축비 등
운전	5억원	2년거치 3년상환	•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

### 3.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총 1,329억원 / 중소기업(폐기물·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기업)

지원분야	기업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지원용도
시설	25억원	3년거치 7년상환	• 장비·장치·설비의 제작·구입·설치 및 건축비 등
운전	5억원	2년거치 3년상환	•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원료구입비 등 운영비 ※ <b>긴급경영안정자금(100억원) 신설</b>

### 4.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총 49억원 / 일반 기업(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한 기업)

지원분야	기업당 지원한도액	대출기간	지원용도
시설	30억원	5년거치 10년상환	•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

## 정책자금 융자절차

